KOSHA GUIDE

C - 59 - 2022

- (2) 작업 시작 전 건물구조 검사 시 지붕구성 부재의 내구성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,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마감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- (3) 지붕상부에 새로운 태양광설비를 설치 할 경우에는 적재하중(설비) 및 작업하중에 대한 지붕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해당건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상황을 알리고 접근을 통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5) 개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은 6.2항 경사진 지붕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과 6.3항 파손되기 쉬운 지붕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 전 건물주(건물관리책임자)는 건물 설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붕 위 적정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없으면 근로자가 부서지기 쉬운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7. 지붕작업 시 안전을 위한 관계자 역할

7.1 건물주의 역할

건물을 소유하거나,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는 지붕작업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건물의 설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붕 교체에 따른 설계 감독자와 계약자를 지명하며, 긴급히 지붕 수리를 하도록 작업자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.

- (1) 지붕의 재질
- (2) 지붕의 완공 시기